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7324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732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단530919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고, 항소인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국

2.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정휘담

변론종결 2022. 5. 12.

판결선고 2022. 8. 1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단5309190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B 사이에 2020. 7.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B에게 인천지방법원 S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2021. 12. 22.자 배당표의 배당금지급채권 167,023,452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배당금지급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C 사이에 2020. 7.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D 사이에 2020. 7.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7. 28. 접수 제3443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다. 피고 D는 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7. 28. 접수 제34439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을다 제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 2행 ‘이 사건 1부동산’을 ‘이 사건 2부동산’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라.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들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피고 C은 대부업자로서 B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업무상 B에게 어음할인대출 및 금전 대출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D 또한 B와 개인적인 친분이 깊은 사이도 아니고, B에 대한 채권자이자 임차인으로서 피고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B 작성의 진술서(을다10호증)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5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S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 절차에서 2021. 12. 22.자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C은 167,023,452원을 배당받은 사실, 원고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하여 피고 C이 위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채무자인 B에게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배당금지급채권 167,023,452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3항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재판장 판사 구광현, 판사 양철한, 판사 이정형

별지